문항1. 정보수집 정책의 관점에서 개인의 동의를 얻는 2가지 방식이 무엇인지 명칭을 작성하고,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8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1조에서 선언하듯이,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과 존엄의 가치를 구현”하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마치 성역처럼 여겨질 위험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이 그러하듯 어떤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늘 그 하위 가치들의 세밀한 형량과 조정이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기초하여 인격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념적 토대를 이룬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전통적인 권리 분류법에 따르면 절대권 내지 지배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개념상 강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역시 이를 둘러싼 수많은 가치나 이익들의 균형 있는 고려와 세밀한 조정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정보 통제권이자 표현 통제권의 속성도 가진다는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인격권의 보호범위는 소유권과 같은 절대권과 비교할 때 형량과 조정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전제가 되는 합리적 인간상은 현실적 인간상과 거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는 좀 더 균형감 있는 조정 작업을 통하여 확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한 동의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하는 제도로서 현재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이념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이상 동의 제도도 그 이념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권리 보호 방식에 관한 동의 규칙(property rule), 보상 규칙(liability rule), 양도불가능 규칙(rule of inalienability)의 틀에 비추어 검토하더라도 동의 제도의 정당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동의 제도가 현실 속에서도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정보주체의 정보력, 인지력, 판단력, 협상력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의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실 속에 나타난 정보주체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동의의 가공할 만한 법적 힘에 기대어 오히려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는 부분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있어 동의 제도를 기계적으로 관철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의 제도를 재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동의 제도의 문제점과 이와 유사한 약관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 현황을 참조하면 동의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 첫째, 정보제공의 단순화와 실질화를 통해 동의의 형식화를 방지하는 방향이다. 이는 정보주체가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를 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보제공의 단순화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정보제공 기준에 배치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존 정보제공과 병행하여 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단순화된 정보는 텍스트(text) 요약판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표(table)나 이미지(image)를 사용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에 대한 등급제나 인증제를 통해 제3의 전문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정도를 1차 판정한 뒤 그 판정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제반 노력들은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동의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최종적인 결정 주체는 정보주체 개인이므로 그 개인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다. 둘째, 사전적 통제로서의 동의 제도를 완화하고 다른 통제 수단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이다. 동의 제도의 완화는 디폴트 규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디폴트 규칙은 적절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할 것을 반영하는 규칙이다. 한편 동의를 거부하면 거래에서 예정한 본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동의사항 중 필수사항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선택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필수동의사항에 대해서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에 따라 일단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전제하되 동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동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한편 동의 제도를 완화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다른 통제 수단들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동의 제도와 같이 수집 단계에서의 사전적 통제 외에도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파기 또는 법적 책임 추궁과 같은 이용 단계에서의 사후적 통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제에 따른 법적 통제 외에도 프라이버시 증진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PETs)을 활용한 기술적 통제, 공공기관에 의한 통제 외에도 민간영역에서의 자율통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문항2. 디지털 발자국의 의미와,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2가지 기능의 명칭을 작성하고,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42점)

매우 제한적이지만 유명인사들 가운데 무명시절에 부주의하게 남긴 게시글이나 사생활이 노출된 영상자료 등으로 인해 커다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온라인 활동의 흔적들이 생성되고 있으며, 과거의 부정적인 기록이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가는 경우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고인이 남긴 여러 사진이나 게시글 및 고인과 관련된 자료들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기억이 계속 떠올라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거 흔적을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온라인에 여기저기 퍼져있는 개인과 관련된 기록들을 지워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미래의 유망 직종으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삭제해주나요?**

 검색으로 노출되는 각종 개인정보 (이름, ID,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과거에 작성했던 게시글, SNS 서비스에 올린 글, 사진, 동영상 등

 본인에 대한 악성 댓글, 신상털기 자료, 명예훼손성 각종 글 및 보도자료 등

**디지털 세탁소**

철없는 시절에 올린 허세글이나 비방글, SNS에 올린 옛 애인과의 사진, 혹은 타인에 의한 악성댓글이나 신상털기 자료가 온라인상에 퍼져 나가게 되는 경우, 당사자는 대인관계에서 피해를 보거나, 심한 경우 일상생활이 힘들만큼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 퍼져버린 자료를 개인이 일일이 찾아 삭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대신 찾아서 삭제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디지털 세탁소’ 또는 ‘온라인 평판관리’ 서비스라고 합니다.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 개인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해 부정적인 보도내용이나 악성 댓글을 삭제해주는 기업용 서비스도 있습니다.

디지털 세탁소는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을 지워줌으로써 ‘잊혀질 권리’를 실현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범죄자의 과거 행적 삭제로 인하여 유권자나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두 권리의 충돌은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고인이 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온라인상에 남긴 게시글, 블로그 포스팅, SNS에 올린 사진 등의 흔적을 디지털 유산이라고 하며, 디지털 장의사란 고인이 남긴 디지털 유산을 삭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유가족의 의뢰로 고인의 정보를 삭제해주기도 하지만, 의뢰인이 직접 사후에 삭제할 기록과 유족에게 남겨줄 기록을 구분해놓으면 의뢰인이 죽은 뒤에 요청에 따라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2013년 4월 브라질 법원에서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고인의 페이스북 계정과 추모페이지 삭제를 명령하였고, 이러한 판례에서 알 수 있듯 해외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삭제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이며 관련 서비스들이 성업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디지털 장의사를 미래 유망직종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가족이 의뢰하는 경우, 고인의 개인정보 삭제 권한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며, 불법성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